5. 교육훈련사업

가. 2008 교육훈련사업 개요

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(농촌지도사 유소나,031-229-5857)입니다.

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지식·기술·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농업인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맞춤형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체 육성

(1) 기본방향

○ 농업인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계획 수립

○ 중앙, 도, 시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

○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추진

○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 추진하여 교육성과 제고

※ 농업인교육 교관요원 양성을 위한 특별연수 추진

<농업인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에 따라 맞춤식 교육 체계 확립>

교육과정	대 상	교육방향
농업인대학 교육	전 업 농	문제해결 중심의 품목별 심화기술, 농촌개발리더 역량
품목별 전문교육	준전업농 성장가능 중소농 창업농	소득증대를 위한 품목별 전문기술
실용교육	고령농, 한계농 겸업농	당면 영농기술, 농정시책 홍보
평생교육	여성, 노인, 다문화가족	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
농심교육	도시민, 초중고생	농업·농촌에 대한 이해 및 홍보

(2) 세부 추진계획

□ 농업인 교육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

○ 지역농업리더 양성 및 농업인의 고급 전문기술 수요에 부응하여 농업인 대학과정 운영 확대

○ 농업인의 의견과 교육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육계획에 반영

- 사전에 농업인단체, 품목별농업인 등의 의견조사 결과 활용

○ 다수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기술과 관심분야가 동일한 농업인을 가급적 소그룹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교육 전개

○ 친환경농업교육, 우수농산물(GAP) 품질관리 교육 등 국가 시책에 따른 교육은 농업인 수요를 감안하여 교육과정 운영

○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자체 농업인교육도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 전문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추진

□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 교육 수행 주체들과 협력강화

○ 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에 강사, 교육인프라, 교육교재 컨텐츠 등을 지원하고 단체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역할 분담

○ 성공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전문가를 사례발표 등 강사로 활용

□ 농업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

<농업인대학>

○ 지역특화 소득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전문교육

○ 지역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및 지역농업 네트워크 구축 관련교육

<품목별 전문기술교육>

○ 시군별 특화품목조직 농업인 연중교육

○ 품목별 주요 영농시기별 교육

○ 지역별로 핵심 수출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

<실용교육>

○ 새해영농설계교육의 영농기술분야 및 농촌생활자원 교육

○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과정에서 추진하는 수시 교육

○ 우수농산물관리(GAP) 관련 농업인 교육

-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실시요령 및 관리기준에 대한 교육
- 농약·비료 사용 요령 등 안전농산물 생산관리 교육
-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, 수확후 위생관리 요령 교육

○ 농기계 관련교육

<평생교육>

○ 유통 및 전산 전문교육

- 농산물가공교육장비가 설치된 시군의 농산물 가공교육
- 경영유통, 가공,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 유통 종합교육

○ 4-H, 농촌노인, 농촌주민대상 각종 교육

<농심교육>

○ 소비자 농촌생활교육

- 도시민 대상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교육,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, 농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불신풍조 해소
- 도시소비자와 농업관련 단체간의 상호이해와 현장체험으로 농촌문화의 공익적 가치 인식
- 소비자와 생활과학 시범지역과의 연계활동 시범 지원으로 도시소비자에게 농촌 진흥사업 홍보·공유

○ 유치원~고등학교 학생 대상 농업홍보 교육

□ 농업인교육 추진내용

○ 교육시기 : 연중(교육과정별 교육시기 및 기간 등을 별도 지정)

○ 교육장소 : 시군농업기술센터, 농장 등 교육방법에 따라 결정

○ 교육내용 : 교육과정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과 편성

○ 교육방법 :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, 토의, 실기실습, 사이버교육, 사례발표, 비교견학 등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

○ 교육평가 : 교육 참여자 및 교수평가를 실시하여 차후 교육운영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

(3) 농업인교육 결과 평가 및 활용

□ 농업인교육 추진결과 평가를 통한 성과분석

○ 농업인교육 연간계획에 따른 결과 평가를 도단위, 시군단위로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 교육계획에 반영

○ 도원에서는 교육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제출

□ 농업인교육 추진 평가결과 활용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교육결과 및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하여 교육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

○ 전문교육 수료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후관리

(4) 관련 법규

□ 공무원교육 법규

○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

○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

○ 농촌진흥법 제2조 3항

-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

○ 행정자치부 교육훈련세부지침(행정자치부 교훈12135-28, '99. 10. 14)

□ 농업인교육 법규

○ 농촌진흥법제2조3항 및 동법시행령,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1조2항, 64조5항

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

□ 행정사항

○ 특·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앙의 교육훈련과정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

○ 2008년 농업인교육훈련 과정별 추진상황(금회/누계)을 매분기말 20일전까지 농업기술원(기술기획과)에 종합보고

○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: 엑셀로 작성 제출

<2008년 ○○시(군) 농업인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(매분기 작성)>

구 분		예산액(천원)								연간계획	교 육 인 원 (명)				
		확보액				집행액(누계)					금 회			누 계	
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계	국비	도비	시군비		계획	실적	비율	실적	비율
계															
도원	소 계														
	지역특화소득품목교육														
	전문농업정보 교육														
	기계화영농사 교육														
	신규농업인농기계교육														
	일반농기계 교육														
	여성농업인과제교육														
시군	소 계														
	새해영농설계교육														
	품목별상설교육														
	농업인대학 교육														
	농업인수출품목교육														
	당면과제현장교육														
	GAP농업인 교육														
	농업인정보활용교육														
	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														
	여성농업인능력개발														
	농촌노인교육														
	농촌청소년교육														
	농심함양교육														
	취미교양교육														

- 작성주기(제출기한)

  · 2008 추진계획 및 1/4분기 추진실적 : 3. 10

  · 2/4분기 추진실적 : 6. 10

  · 3/4분기 추진실적(3/4) : 9. 10

  · 4/4분기 추진실적(12.31일까지 예상실적 포함) : 12. 10

- 작성요령 : 가급적 농촌지도사업지침의 분류기준에 따르되 다음 사항 유의

  · 품목별 상설교육 :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교육 등 전문농업 기술교육

  · 농업인대학 : 6개월 이상 연 12회, 100시간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

  · 당면과제현장교육 : 봄철,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등 당면영농기술 관련 교육

  · GAP농업인교육 : 다른 교육(예, 새해영농설계교육, 품목별 상설교육 등)과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중점을 둔 쪽으로 집계

  · 농촌청소년 교육 : 학교4-H회원 과제교육, 진로지도교육 등

  · 농심함양교육 : 센터방문자 교육(유치원, 초등학교), 가정원예 등 주민교육, 주말농장 운영자교육 등

  · 취미교양교육 :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포함하기 어려운 농촌주민 대상 취미, 교양교육 등